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25
----------	------

발의연월일 : 2026년 8월 28일

발 의 자 : 정혜영 의원

1. 제안이유

반려동물 학대 방지, 진료비 지원, 입양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복지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적 틀을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나.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안 제19조의2)

다.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안 제19조의3)

라. 반려동물 학대방지 및 예방(안 제19조의4)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덧붙임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다.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라. 기타사항 : 해당없음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하남시 동물보호·관리 및 복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취약계층의 지원)”을 “(사회적 약자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등 취약계층이”를 “등의 사회적 약자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 약자의 정서적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회적 약자는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인

④ 제2항에 따른 진료비에는 예방접종, 검진 등 통상적인 진료와 질병

치료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며, 지원액의 한도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⑤ 시장은 제2항의 지원대상자가 자격 요건을 상실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① 시장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 혼자 생활하는 사람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의 정서적 안정과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유기동물 입양 연계 및 예방접종·건강관리 지원
2. 반려동물 돌보미 양성 및 교육
3.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제공 및 파양·소유권 포기에 따른 반려동물 거취에 관한 사항
4. 입양된 반려동물의 사후관리 및 재유기 방지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돌보미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자격·교육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9조의4(반려동물 학대방지 및 예방) ① 시장은 반려동물의 학대를 방지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반려동물 학대의 실태조사 및 예방대책 수립
2. 학대행위에 대한 신고체계 운영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3. 학대 피해 동물의 구조·치료·보호 및 재입양 지원
4. 반려동물 사후 장례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학대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1. 「하남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2. 「하남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3. 「하남시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u> 제19조의2(<u>취약계층의 지원</u>) 시장 은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등 <u>취 약계층</u>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복 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 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 비를 지원할 수 있다. <u><신 설></u> <u><신 설></u>	<u>하남시 동물보호·관리 및 복지에 관한 조례</u> 제19조의2(<u>사회적 약자의 지원</u>) ① ----- <u>등의</u> <u>사회적 약자가</u> ----- ----- ----- -----. ② 시장은 <u>사회적 약자의 정서 적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예산의 범 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u> ③ 제2항에 따른 사회적 약자는 <u>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u>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 설>

<신 설>

<신 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
활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
하는 중증장애인

④ 제2항에 따른 진료비에는 예
방접종, 검진 등 통상적인 진료
와 질병 치료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며, 지원액의 한도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⑤ 시장은 제2항의 지원대상자
가 자격 요건을 상실하거나 거
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
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제19조의3(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① 시장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으로 혼자 생활하는 사람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해당하면서 「장애인복지
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의 정서
적 안정과 유기동물 보호를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반려동물 입
양 및 양육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유기동물 입양 연계 및 예방

<신 설>

접종·건강관리 지원

2. 반려동물 돌보미 양성 및 교육

3.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제공 및 파양·소유권 포기에 따른 반려동물 거취에 관한 사항

4. 입양된 반려동물의 사후관리 및 재유기 방지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돌보미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자격·교육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9조의4(반려동물 학대방지 및

예방) ① 시장은 반려동물의 학대를 방지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반려동물 학대의 실태조사

및 예방대책 수립

2. 학대행위에 대한 신고체계
운영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3. 학대 피해 동물의 구조·치
료·보호 및 재입양 지원

4. 반려동물 사후 장례문화 조
성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학대 예방
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려동
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
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
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
축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8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4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929호, 2025. 4. 22., 타법개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④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미수범)의 죄

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3.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의 죄

4.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의 죄

5.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6.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사),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및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및 제294조(미수범)의 죄

7.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8.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9.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10.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1.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의 죄

12.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제357조(배임수증재)의 죄

13.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14. 제8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죄

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제18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죄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호 및 제11호의 죄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